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52

발의연월일: 2024. 6. 17.

발 의 자:김승수・임이자・성일종

박충권 · 김석기 · 신성범

서지영 · 김위상 · 송언석

김성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판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간행물을 발행할 때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이하 "정가"라 함)을 정하여 간행물에 표시하도록 하고,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이를 정가대로 판매하도록 하되 정가의 15퍼센트 이내에서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조합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웹툰, 웹소설 등 신생 웹콘텐츠 산업의 경우 전통적 간행물과는 생산 및 유통구조의 차이가 존재하는 바, 산업 특성상 작품 생산 및 소비 주기가 짧아 지속적인 노출을 위한 다양한 프로모션 허용에대한 요구가 높아져 오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출판사의 폐업신고 기한을 7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출판업 특성상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많아 생계로 인한 폐업신고 기한을 준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폐업신고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 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웹툰과 달리 정의 규정이 없는 웹소설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웹툰과 웹소설에 대해서는 정가대로 판매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의적용을 제외하도록 하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웹툰 또는 웹소설을 판매하는 자가 판매촉진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합의없이 저자 또는 출판사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폐업신고 기한을 30일로 연장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의2ㆍ제22조제7항제5호ㆍ제23조제1항제3호 신설 및 제11조제1항 등).

법률 제 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웹소설"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에서 최초로 제작·공개된 소설로서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제11조제1항 중 "7일"을 "30일"로 한다.

제22조제7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2 조제5호의2에 따른 웹툰(이하"웹툰"이라 한다) 및 웹소설 제23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웹툰 또는 웹소설을 판매하는 자가 판매 촉진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가격할인에 따른 비용 등을 합의 없이 계약 상대방인 저자 또는 출판사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웹툰 또는 웹소설

을 판매하는 자가 제1항제3호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다고 신고를 받 거나 이를 인지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및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공정거래위원장은 제5항에 따른 요청를 받으면 그 내용을 검토하여 6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1년의 범위에서 그 조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제23조제6항에 따라 위반사항에 대한 공정거래 위원회의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 다.

3. 제2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판매촉진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가격할인에 따른 비용 등을 합의 없이 계약 상대방에게 부담시킨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 설></u>	4의2. "웹소설"이란 「정보통신
	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
	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에서
	최초로 제작・공개된 소설로
	서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제11조(폐업 및 직권말소) ① 제9	제11조(폐업 및 직권말소) ①
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영	
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u>7일</u> 이내에 문화체육관	<u>30일</u>
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2조(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	제22조(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
매) ① ~ ⑥ (생 략)	매)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⑦

해당하는 간행물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 니한다.

1. ~ 4. (생 략) <u><신 설></u>

<u>5.</u> (생 략)

⑧ (생략)

제23조(간행물의 유통질서) ① 간행물의 유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간행물의 저자, 출판 및 유통에 관련된 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2. (생략)

<신 설>

<u>.</u>
1. ~ 4. (현행과 같음)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u>갖춘 「만화진흥에 관한 법</u>
률」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웹툰(이하 "웹툰"이라 한다)
및 웹소설
<u>6.</u> (현행 제5호와 같음)
⑧ (현행과 같음)
제23조(간행물의 유통질서) ①
·

- 1. 2. (현행과 같음)
- 3.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웹툰 또는 웹소설을 판매하는 자가 판매촉진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가격할인에 따른 비용 등을 합의 없이 계약 상대방인 저자 또는 출판사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3. (생략) ② ~ ④ (생 략) <신 설>

<신 설>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제28조(과태료) 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서 신설>

- 4. (현행 제3호와 같음)
- ② ~ ④ (현행과 같음)
-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웹툰 또는 웹소설을 판매하는 자가 제1항 제3호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다 고 신고를 받거나 이를 인지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및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 청할 수 있다.
- ⑥ 공정거래위원장은 제5항에 따른 요청를 받으면 그 내용을 검토하여 6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문화체 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협의하여 1년의 범위에 서 그 조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다만, 제3호의 경우 제 23조제6항에 따라 위반사항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1.・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u><신 설></u>	3. 제2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
	여 판매촉진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가격할인에 따른 비용
	등을 합의 없이 계약 상대방
	에게 부담시킨 자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